

제139회 구의회 임시회

'08. 9. 19 ~ 9. 25



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추진사항 보고



보 건 소
(원산지표시관리추진반)

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추진사항 보고

2008.7.8부터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되어 그동안 식품위생법으로 시행하던 음식점 육류 등의 원산지 표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홍보 및 이행실태에 대한 지도·점검을 강화하여 동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함

※ 근거 :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의2
 식품위생법 제10조의3
 서울시 위생과-139('08.7.8)

□ 추진개요

- 추진기간 : '08. 7.10 ~ 년중 계속
- 대상업소 (단위:개소)

계	일반음식점			휴게음식점			위탁급식영업소	집단급식소
	소계	100㎡ 미만	100㎡ 이상	소계	100㎡ 미만	100㎡ 이상		
7,332	6,212	5,187	1,025	834	759	75	94	192

● 대상품목 및 시행시기

품 목	대상업소	시행일	비 고
쇠고기	일반·휴게음식점, 위탁급식소, 집단급식소	'08.7.8 (전면시행)	'07.1.1부터 규모에 따라 단계별 시행
쌀	100㎡ 이상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위탁급식소	'08.6.22	
배추김치		'08.12.22	
닭고기, 돼지고기	일반·휴게음식점, 위탁·집단급식소	'08.12.22	

● **추진방법 : 단계별 추진**

- 1단계('08.7.9~7.18:10일간)→이행실태 표본조사 및 지도·점검
- 2단계('08.7.19~9.30:3개월간)→지도·점검 및 단속병행
 - ▷ 100㎡미만의 생계형 음식점 : 행정지도 및 계도위주 점검
- 3단계('08.10.1~계속) : 모든 대상업소 단속위주 점검

● **위반시 처벌기준**

- 원산지 허위표시 :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부과
- 원산지 미표시 :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

□ **추진기구**

● **기 구**

- 형태 : 임시기구인 추진반(반장-5급)으로 구성 ⇒ T/F 팀
- 명칭 : 원산지표시관리 추진반
- 팀구성 : 식품안전팀(3명), 원산지관리팀(5명)
- 국소속 : 보건소(설치: '08.7.10)

● **인 력 : 9명**

- 5급 : 1명(위생과장 겸직)
- 6급 : 2명(팀장)
- 7급이하 : 6명(기능직 포함)

● **추진업무 : 음식점 원산지표시 관리, 홍보 및 단속**

※ 음식점을 제외한 농·수축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관리(지역경제과)

□ 그간의 추진사항

【 원산지 표시제도 홍보 】

- 구청장 공한문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 가이드북(60㎡이상업소) 2,500부 발송 : 2008.7.10
-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홍보포스터(10,400매) : 2008.7.10
 - 배부처 : 일반음식점 6,200부, 휴게음식점 800부, 동주민센터 3,000부
 - ※ 나머지 400부는 신규·변경·지위승계신고시 영업자에게 배부
- 구청장 공한문 및 전단지(60㎡미만업소) 4,500개소 발송 : 2008.7.21
- 홍보전단지(원산지표시 이렇게 하세요) 배포 : 21,000매 중
 - 동주민센터(3,000매), 보건소민원실(1,500매), 구청민원실(500매)
 - ※ 잔량(약11,500매)은 단속 등 업소 방문시 홍보용으로 활용
- (사)한국음식업중앙회 영등포구지회 홍보협조요청 공문전달 : 2008.8.7
- 구자체 홍보책자 제작배부(10,000부): 2008.8(배부중)
 - 홍보 책자명 : “음식점 원산지표시 소중한 신뢰의 시작입니다.”
 - 내 용 : 대상품목, 시행시기, 표시방법, 준수사항, 처벌기준 등
 - 용 도 : 지도·점검을 위한 업소 방문시 홍보용으로 직접 배부
- 원산지표시 관련 구청(보건소)홈페이지 홍보 : 2008.8
- 원산지표시 지도·점검시 홍보조끼 제작 : 2008.8
- 원산지표시 홍보 스티커 배부중(7,200매) : 2008.9.10

【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실시 】

- 원산지표시 조기정착을 위한 자치구 담당공무원 교육(서울시)
 - 일 시 : 2008.7.24 14:00 ~ 17:00(용산구 구민회관)
 - 대 상 : 자치구 원산지 표시 공무원 전원(영등포 8명)
 - 주 최 : 서울시 원산지표시 관리추진반
 - 내 용 : 원산지표시 관리대상, 방법, 단속요령 등

- **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및 담당공무원 교육(자체 교육)**
 - 일 시 : 2008.7.28 13:00 ~ 14:00(보건교육실)
 - 대 상 :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4명, 공무원 8명
 - 내 용 : 원산지표시 대상품목, 시행시기, 표시방법 등 홍보중점
- **서울시 합동 점검 참여**
 - 일 시 : 2008.8.11 13:00~ 17:00
 - 내 용 : 서울시 소비자식품감시원2명과 직원2명, 구직원4명 등 8명 합동으로 여의도 합동 지도점검
 - 결 과 : 여의도 지역 30개업소 지도점검 했으나 30%정도 일부 미흡하여 시정조치
- **구청장 주제 담당공무원 교육**
 - 일 시 : 2008.8.14 16:30 ~ 17:30(구청장실)
 - 대 상 : 담당공무원 8명
 - 내 용 : 지도·점검시 공무원의 자세 및 단속요령 등
- **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간담회**
 - 일 시 : 2008.8.22 12:00 ~ 13:30
 - 대 상 :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25명(공무원 포함)
 - 내 용 : 소비자 감시원의 자세 및 점검요령 등
- **집단급식소 책임자 교육실시(서울시)**
 - 일 시 : 2008.8.28 14:00 ~ 16:30
 - 대 상 : 집단급식소 책임자(영등포구, 동작구, 관악구, 서초구) 및 우리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, 담당공무원 (우리구 총 152명 참석)
 - 장 소 : 동작문화원 4층 대강당
 - 내 용 : 원산지표시 대상품목, 시행시기, 표시방법 등

【 이행실태 지도·점검 】

● 대 상 : 7,332개소

● 점검내용

-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여부
-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 표시여부 및 사실여부
- 원산지 증명서(도축검사증명서, 등급판정서), 거래명세서 등 보관여부
- 필요시 한우 유전자 검사의뢰(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)

● 점검반운영 : 2인1조 총11개반 22명

- 민·관합동 점검반 편성운영(공무원6,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16)
- 조끼 제작 업소방문 시 착용 : 홍보효과 제고

● 추진실적

('08.9.17 현재)

대상업소	점 검 결 과				진도
	소 계	이행업소	미 이행업소	이행율	
7,332	7,132	5,917	1,215	82.9%	97.2%

- 이행실태 표본조사 실시 : '08.7.9~7.18
 - 조사대상 : 50개소
 - 조사결과 : 원산지 표시(전부표시27, 일부미표시12, 전부미표시11)
 - 조 치 : 현장 점검시 및 홍보책자 배부 표시요령 등 안내
- 지도·점검실시 : '08.7.19~9.30(추진중)
 - 점검결과 : 적합5,917, 부적합1,215(쇠고기1,103, 쌀115)
 - 부적합내역 : 원산지미표시1,112, 원산지·식육의미표시88, 원산지증명서 미보관15
 - 조 치 : 부적합 업소 집중 홍보 및 현지시정

● 단속결과 : 일반음식점 2개소 행정처분 진행중(외부합동점검)

- 위반사항 : 음식점 원산지 허위표시(2건)

□ 향후계획

- 지도·점검 강화('08.10.1~계속)
 - 모든 대상 업소 단속위주 점검하되
 - 고의성이 없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적발보다 계도위주 점검
 - 원산지 허위표시 및 계도 미이행 업소는 규정에 의거 조치
- 점검반 직접 관리(직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)
 - 소홀하기 쉬운 원산지표시 품목(쌀, 배추, 육수 등) 지속적인 홍보
 - 사각지대 업소(호프, 실내포장마차, 외국인음식점) 별도 관리
 - 영세업소 정기적으로 관리
- 인·허가 부서의 원산지 표시 관리
 - 신규업소 및 이전업소 신고시 원산지표시제 홍보
- 지도·점검반 지속운영
 - 원산지표시제 정착시까지 운영
 - 외부 합동단속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중심 운영
- 영업자 단체 자율지도 활동 유도
 - 관련단체 : 한국음식업중앙회 영등포지회,
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 영등포지회
 - 방 법
 - 업소를 순회하며 홍보자료(포스터, 리플렛,스티커 등) 배부
 - 관련단체 위생교육시 음식점 원산지표시에 대한 집중 홍보
 - ※ 한국음식업중앙회 영등포지회 → 11월초 교육예정